

# 서울시 公園行政組織의 改編方案\*\*

鄭 弘 翼\*

<차례>	
I. 組織의 變遷	1. 行政管理制度의 問題點
1. 本廳	2. 改善方案
2. 區廳	參考資料：主要外國都市의 公園 現況
II. 現行制度	과 行政管理體制
1. 機構와 機能	1. 美國
2. 人 力	2. 自由中國(臺北)
III. 問題點 및 改善方案	3. 日本(東京)

人口의 增加와 高密化, 生活水準의 상승, 餘暇需要의 증가, 公害의 深化 등 一聯의 社會經濟, 環境의 變化에 따라 서울市民의 公園需要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반면에, 한정된 自然資源, 以及 工業 및 住居用 土地需要와의 경쟁, 地價의 昂騰 등 要因들은 서울市의 公園供給能力을 크게 制限하고 있다. 이러한 需要와 供給의 不均衡한 틈바귀 속에서 效率的인 公園政策을 違行해야 하는 어려운 課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서울市의 公園行政이다.

本稿는 難題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市의 公園行政을 보다 效率的으로 違行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서, 서울市 公園行政組織의 改善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 組織의 變遷

### 1. 本廳

60년대 아래 서울시의 行政組織은 1962, 1973년, 1983년에 세 차례 큰 變動을 하였는데, 公園行政 組織도 그때마다 크게 改編되었으며, 그 중간에 또한 소규모의 변화를 겪었다. 行政의 需要變化에 適應한 組織改編이 아니고 대부분은 政治環境의 變化에 따른 改編이었다고 하겠다.

1972년 가지 第一期의 骨格을 이루어 온 組織의 形成은 5·16 후 전반적인 行政개혁조치에

\* 行政大學 副教授

\*\* 本稿은 서울市의 의뢰로 실시된 서울市 公園綠地政策方向 研究의 一部을 修正補完한 것이다.

따라 1962년 1월에 공포된 「서울特別市 行政에 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市機構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때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때, 建設局 土木課 計劃係에 公園業務가 처음 주어졌으나, 1963년 3월에 土木課안에 公園係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獨립된 係에서 공원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公園係는 1965년 9월에 公園施設係로 개칭되었고, 그에 따라 업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公園施設係로 변화한 배경은 이러하다. 서울시의 綠地業務는 產業局內에 山林課가 1965년에 설치되어 담당하고 있었다가 1966년에 그 명칭이 綠地課로 바뀌면서 그 안에 公園內의 綠地業를 담당하는 係로 公園係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產業業務 土木課에 있던 公園係는 公園施設係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第二期는 1973년 6월 서울시 行政機構의 전반적인 擴大改編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行政機構는 1962년에 特別措置法이 실시된 이래, 行政여건이 급속하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부분적인 수정만 해왔기 때문에 行政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1973년 6월 大統領令으로 서울특별시에 行政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어 市組織의 대폭적인 擴張改編이 단행 되었던 것이다.

公園行政은 綠地行政과 함께 이때 가장 기구가 크게 확장된 분야이다. 產業局 綠地課가 綠地局으로 승격되고 여기에 產業局 土木課에 있던 公園施設係가 公園課로 승격되면서 포함되었다. 분리되어 있던 公園과 綠地業務가 통합되어 局單位로 성장한 것이다. 1972년 당시 동양최대라고 일컬었던 어린이대공원이 착공되어 이듬해 5월 5일 어린이 날에 개장되는 등 공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던 것이 작용하였고, 또 전담국이 있는 동안에 공원행정도 활발하여 73년 4월에는 도산공원, 6월에는 낙성대가 조성되었고, 77년에는 남서울 대공원이 착공되었다.

제 3기는 제 5공화국의 行政機構改編 措置에 의해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산 절감, 행정 능률화를 위해서 정부조직의 統廢合이 斷行되었는고, 서울市도 大局大課制의 原則에 따를 기구축소를 실시하였다. 종래 분리되어 있던 環境局과 綠地局이 통합되어, 環境綠地局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종래에 綠地局에 있던 세 과중에서 造景課가 없어지고, 公園課와 綠地課가 통합되어 公園綠地課가 되었다. 그러나가 업무량에 따른 再調整으로 公園課와 綠地課가 다시 분리되게 되었다. 겨우 公園行政을 전담하는 課水準의 組織을 갖게 된 것이다.

### 서울市 公園行政機構의 變遷

제 1기 (1962. 1~1972. 5)

1962. 建設局 土木課 計劃係에서 공원행정 담당

1963. 7 建設局 土木課에 公園係 신설

1965. 9 公원내 綠地業務를 담당하는 기구로 產業局 綠地課내에 公園係가 신설되면서 土木課의 公園係는 公園綠地係로 명칭변경

제 2 기 (1973. 3~1981. 10)

1973. 6 產業局 綠地課, 建設局 土木課 公園施設係를 통합하여 綠地局 新設 綠地課 公園課, 造景課를 둠.

제 3 기 (1981. 11~ )

1981. 11 綠地局과 環境局을 통합하여 環境綠地局 新設, 清掃課, 環境課, 綠地課, 公園課를 두고, 公園課안에 公園管理係와 公園開發係를 둠.

## 2. 区廳

區廳에서는 원래 產業課 農林係에서 공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가 農林係의 명칭이 綠地係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本廳의 機構가 대폭확장 되던 1973년에 區廳機構도 개편되면서 綠地公園이 많은 동대문, 성동, 성북, 서대문, 영등포, 도봉, 관악의 7개區에 綠地課가 新設되어 부분적인 機構의 格上이 일어났다.

1975년 2월에는 區行政體制를 강화하기 위하여 區局制가 실시되어 市民生活局과 建設管理局이 신설되었는 바, 綠地課는 建設管理局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에 民防衛局, 建設局, 都市整備局 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公원녹지행정은 設建管理局의 所管으로 나아 있었다.

1981년 11월 본청의 기구가 축소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區廳에서는 綠地課가 公園綠地課로 개칭되었고, 소속도 建設管理局에서 都市整備局으로 옮겨졌다. 公園綠地課는 그 아래 公園係와 綠地係를 두어 과거 綠地係가 하던 公園 및 造景을 公園係가 담당하고 保護係에서 하던 임정·사방조림을 綠地係가 맡게 되었다.

## II. 現行制度

### 1. 機構와 機能

前述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公園行政은 現在 環境綠地局 公園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綠地課에서도 公園綠地에 관하여 부분적으로業務를 맡고 있으나 公園課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公園와 관련된 行政體系만을 분석한다.

公園課에 있는 公園開發係와 公園管理係중에서 開發係는 새로운 公園의 造成을 맡고 있고, 公원조성이 끝나면 이를 管理하는 업무는 管理係에서 맡는다. 물론 開發係나 管理係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公園을 직접 조성,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개발과 관리에 대한 事業計劃의 決定과 承認, 下部機關의 감독책임만을 지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公원이

거나 특수 공원인 경우에만 직접 造成計劃을 수립하고 管理事務所를 두고 관리를 한다. 예컨대 어린이 대공원, 서울 대공원, 남산공원의 경우에는 開發係에서 직접 조성계획을 담당하였고 별도의 건설사업소가 계획을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였으며, 관리는 각 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管理系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

近隣公園, 어린이 公園은 원칙적으로 區廳의 公園綠地課(公園係)에서 造成計劃을 작성하여 市에 보내면 公園課에서 이를 심사결정하고, 확정된 計劃을 區廳에서 執行한다. 都市自然公園에 대해서도 基本計劃은 市廳 公園課에서立案하나 그 이후부터의 開發은 대부분 市의 승인을 받아 區廳에서 수행한다.

공원을 管理하는 業務는 관리사무소를 두고 市廳 公園管理係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어린이 대공원, 서울 대공원, 남산공원을 제외하고는 區廳의 責任이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洞事務所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으며, 각洞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관리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편 되어 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추진위원회」는 洞長을 위원장으로 하고 住民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서울시 公園行政의 主務部署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의 공원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위에 적은 바와 같으나 실제로 公園을 造成·管理하는 課程에는 타부서에서 직접, 간접으로 많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公園은 都市計劃으로 造成되는 것이기 때문에 用地의 確保, 施設의 設置, 計劃의 確定課程에 都市計劃局의 모든 課들이 깊히 관여하며, 또 建設管理局에서는 建設指導課와 建設行政課가 관여하게 된다.

都市計劃局의 都市計劃課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며 都市計劃에 대한 地域, 地區 및 區域의 指定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의 설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公園造成計劃은 또 都市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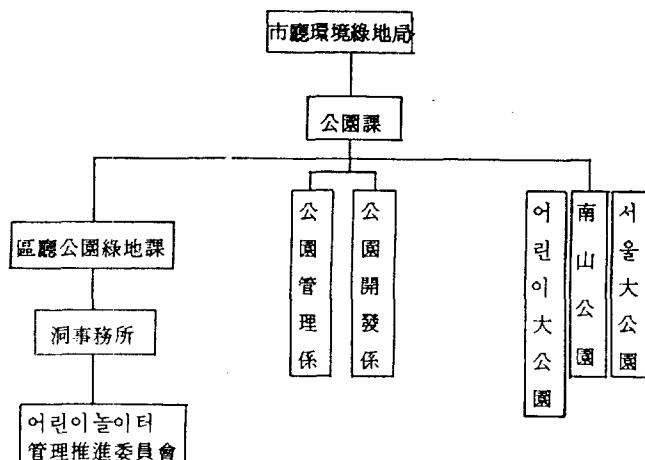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公園行政 關聯機構

課가 事務를 맞고 있는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비로소 地域의 決定 및 施設計劃이 確定된다.

한편, 도시내에서 公園用地를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은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都市再開發事業 이므로, 이를 관장하여 換地豫定地의 指定 및 분할을 맡고 있는 區劃整理課와 再開發課도 公園造成의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역시 도시내 公園用地確保의 주요수단으로 學校移轉跡地 가 있는 之, 首都圈 整備計劃에 의하여 移轉促進地域에서 옮겨 간 학교부지의 사용은 施設計劃의 업무이므로 同課도 서울시의 公園行政에 참여하고 있다.

公園行政에 常時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부서외에도 特殊사업으로 公園業務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 기획단이다. 현재企劃團의 올림픽 施設 1係에서 올림픽 공원, 그리고 施設 2係에서는 아세안 공원을 계획건설하고 있다. 근래 大規模 慶樂施設로 계속 건설되고 있는 漢江高水敷地 公園은 아직 法規上 公園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上·下水局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최근 公園課로 업무가 이전되었다.

이밖에 之 公園內의 文化財에 대한 관리는 內務局文化課에서 맡고 있고 市民의 慶樂에 관한 업무를 交通局 觀光課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公園行政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關聯機構들을 그림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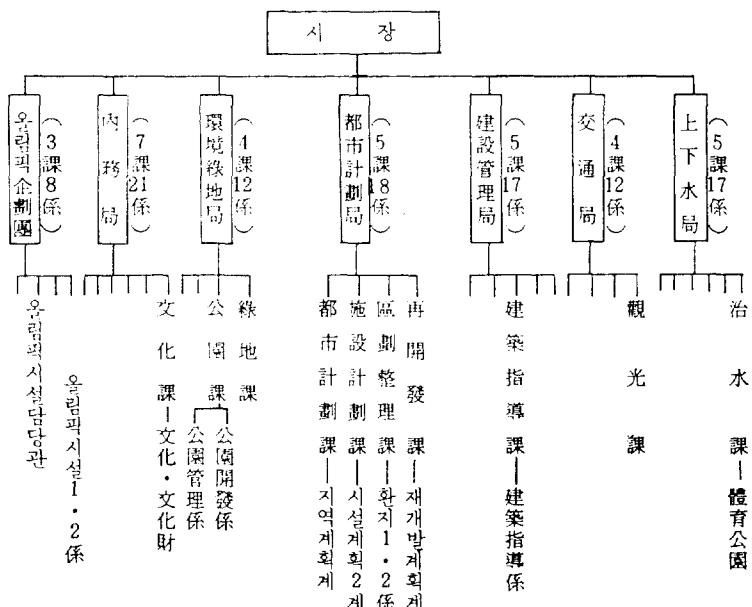


그림 2. 市廳 公園行政 關聯部署

## 2. 八 力

서울市 本廳에 근무하고 있는 環境綠地局員은 一般職 22명 管理職 35명 合計 57명이다. 특수한 事務를 다루고 있는 民防衛局의 24명을 빼고 서울市에 있는 8개 局중에서 가장 작

은 숫자이다. 環境綠地局에는 4개의 課가 있으므로 局長을 제외하고, 課의 平均人員數는 14명인 데, 公園課의 人員은 公園開發係 5명, 公園管理係 5명, 여기에 課長을 합치면 11명으로 平均 課의 規模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서울시의 行政規定에 의하면 環境綠地局長은 一般職인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하게 되어 있고, 公園課長은 書記官 또는 農林技正으로 補하게 되어 있다. 公園開發係의 係長은 地方農林技佐로, 公園管理係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農林技佐로 補하게 되어 있다.

區廳의 公園綠地課 人員은 구청마다 행정수요가 틀리기 때문에, 中區와 같이 3명인 데가 있는가 하면 江東區처럼 11명으로 本廳과 크기가 비슷한 곳도 있다. 區廳의 公園綠地課長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農林技佐로 補하게 되어 있다. 그아래 있는 公園係長이나 綠地係長은 대부분 地方農林技士가 맡고 있다.

環境綠地局의 管理事務所로서, 綠地事業所는 地方農林技正이 所長으로 되고, 그아래 관리계, 사무과, 시험과를 두고 있고 사업과의 총원은 67명이다. 公園管理事務所는 서울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남산공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서울 대공원은 地方副理事官 또는 3급상당 地方別定職으로 補한다 어린이 대공원의 관리사무소장은 地方書記官을 남산공원 관리사무소장은 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農林技佐로 補한다.

### III. 問題點 및 改善方向

#### 1. 行政管理制度의 問題點

現 서울시 公園行政管理制度의 問題點을 政策, 行政組織, 人事營理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政 策

公園政策의 構造를 수직적 관계로 나누어 보면 최상위에 政策計劃 또는 體制計劃이 있고, 다음에 事業計劃, 執行計劃 그리고 管理計劃의 순으로 있다. 政策計劃은 市의 公園政策에 대한 장기 기본 계획이며, 事業計劃은 정책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중기 또는 단기계획으로서 綜合的인 계획이다. 그리고 執行計劃은 개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며, 管理計劃은 조성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公園政策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수준의 계획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市에는 政策計劃이 실제로 不在한 상황이며, 本廳에서는 매년 事業計劃을 세우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都市基本計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公園에 대한 政策計劃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음으로 管理計劃도 극히 단편적으로 있거나, 있는 것도 어린이 공원 관리규정같이 非現實的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政策의 類型側面에서 볼 때, 서울시의 공원정책은 物的計劃에만 치중해왔지 시설활용을 촉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계획(program planning)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 2) 行政組織

서울市의 公園計劃體制의 問題點을 한마디로 한다면 강력한 行政을 추진할 수 있는 行政力이 弱하고 여러 부서로 分散되어 能率性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어린이 공원의 실제 관리는 洞事務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管理의 主體가 되어야 할 새마을 어린이 놀이터 관리추진위원회가 많은 경우에 有名無實한 形편이고, 洞에 배정된豫算이 적고, 人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洞事務所에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區廳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도 한다. 어린이 공원의 事業計劃은 대부분의 근린공원과 함께 區廳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근린공원은 管理事務所가 있어서 管理業務를 맡고 있으나, 管理計劃은 區廳에서 하고 있고 事業計劃도 대개 區廳에서 하고 있으며 事業에 대한 執行計劃과 執行도 區廳에서 담당하고 있다. 自然公園의 경우 造成計劃은 市廳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후에 필요한 事業計劃는 執行을 區廳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市廳이 직접 事業計劃을 하고, 執行은 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피공원, 아시안공원, 그리고 한강고수부지의 체육공원은 독립된 기구에서 計劃, 執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區單位에서 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個別 區廳마다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人力分散으로 인한 區水準에서 人力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環境綠地局내에는 청소과, 환경과가 공원과, 녹지과와 함께 있는데 실제로 청소과와 환경과의 업무는 공원과, 녹지과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 이러한 局의 構成은 行政機能과 관계없이 기구축소의 필요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대로는 積極的行政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고, 政策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도 힘들다.

現行 公園行政中 가장 어려운 일중의 하나가 用地의 確保인데, 이것은 실제로 都市計劃局의 所管業務이다. 공원정책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公園課가 가장 기본적인 用地確保에 대한 決定權은 가지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政策은 수립하기가 어렵다. 公園은 都市計劃施設이기 때문에 政策劃計은 당연히 都市計劃課의 업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都市計劃局의 각 과, 그리고 建設管理局과도 계속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局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非能率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프로그램計劃을 담당하는 機構가 없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 公園課(本廳)에는 公園開發係와 公園管理係가 있는데, 開發係가 物量的인 開發, 施設의 計劃에만 치중하고 있

으며, 管理係도 公園施設의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아무도 전담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것을 좀더 넓게 보면 이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공원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公園의 機能을 都市의 空間確保하고 하는 측면에 한정해 왔고, 市民의 屋外 餘暇活動을 위한 서비스제공이라는 기능을 도외시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 人事管理

첫째로 들 수 있는 문제점은 公園行政人力의 不足과 이의 非效率的인 配置이다. 현재의 公園行政人力을 企劃, 事業, 그리고 管理로 나누어 보면, 本廳과 區廳에 있는 人力은 주로 企業 및 事業人力이며, 管理事務所, 洞事務所의 人力은 管理人力이라고 볼 수 있다.

政策計劃은 本廳의 公園開發係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係수준에서, 5명의 人力을 가지는 17個 區에서 제출하는 公園事業計劃을 검토하고, 종합하고 그 밖에 本廳에서 직접 집행하는 公園開發計劃이나 할 수 있을 정도이며, 政策計劃을 할 수 있는 人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公園行政이 지금까지의 物的 計劃보다 엄격히 施設計劃에만 그쳤던 단계에서 벗어나 공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계획, 동식물원의 운영, 기타 시민의 屋外 레크리에이션까지 확장된다고 할 때 현재의 人力은 크게 모자랄 것이다.

區廳은 公園綠地課로 公園업무와 녹지업무가 같은 課내에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업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만약 공원, 녹지업무를 區單位에서 분리하지 않고, 本廳의 공원·의 人力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區廳의 공원녹지과의 인원은 本廳 공원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區廳의 人力은 本廳에 비해서 오히려 넉넉한 편이지만, 현재 17個區가 모두 區單位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人力의 效率的인 活用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人力이 이렇듯 分散되어 있으면 人力의 專門化가 어려워진다.

근린공원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의 人力配分이 공원의 크기, 入場客의 數 등 管理需要와 不一致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一定한 기준을 세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공원에서는 발생하는데, 현재는 관리수요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人力이 配定되기 보다는 각 區廳의豫算이나 편리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다.

어린이 공·원은 현재의 새마을 어린이 놀이터 관리추진위원회가 有名無實하고, 洞에 配定된豫算이 조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나쁜 곳이 많고, 市에서 정한 일률적인 管理指針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 洞事務所에서 전설담당이 어린이 공원을 맡고 있어 본래의 업무가 위축 많아 공원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에 필요한 人力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 현재로는 계절이 변화에 따른 人力의 효율적 供給을 할 계획이 없이 區廳이나 사무소에서 임시변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이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公務員 採用試驗 즉, 技術考試의 不合理性이다. 현재 公園行

政分野의 기술적은 農林職에 한하고 있다. 農林職에 대한 기술고시의 과목은 농업, 임업, 산림보호, 임업, 연초, 식물재배, 방역, 인삼 경작 등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等級別 試驗科目은 교양이나 一般行政에 관한 과목을 뺀 전문분야에서는 거의 같다. 農林職중에서 公園行政과 가장一致하는 職類는 林業과 山林保護이며, 이들이 고시과목은 극히 작은 차이밖에 없<sup>c</sup>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과목으로 필수와 선택을 보면 造林學, 林業經營學, 林改學, 山林保護學, 砂防工學, 生物學概論이 있다. 따라서, 공원업무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요구되는 지식이며,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造景과 建築에 관한 지식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餘暇活動,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지식도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農林職考試가 공원행정의 전문가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과거의 公園行政이라는 것을 나무나 심고 꽃이나 가꾸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절의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公園行政分野에서 일하는 公務員들의 낮은 土氣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人事管理의 構造의 원인에 큰 책임이 있다. 환경녹지국장을 一般職으로 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本廳 公園課長이 농림기정인 경우에는 局長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 그리고, 부속기관으로서 서울대공원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일반적인 事理官 또는 3級 상당 別定職으로 补하게 되어 여기에도 갈 수가 없다. 또, 공원과내에서도 주무계인 공원관리계장은 一般職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事務官 수준에서도 技術職보다는 一般職이 우대받는 실정이다.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소장은 일반적인 地方書記官으로 补하도록 되어 있어 地方農林技佐가 갈 수 없게 되어있다.

區廳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농림기좌도 할 수 있으나 區廳에서 局長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과장을 하고 나면 막혀 있다. 地方農林技佐를 补하게 되어있는 區廳의 공원계장이나 녹지계장도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人事制度 때문에 좋은 人材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근무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 2. 改善方向

서울市의 公園行政體制는 첫째 體系的으로 政策을樹立할 수 있고, 둘째 現況業務에 한정하지 않고 發展志向의 體制를 갖추어야 하며, 셋째 專門人力을 確保하고 活用한다는 目標아래 다음과 같이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 1) 豐系的 政策의樹立

長期 政策計劃을 시전체로서, 그리고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아래 수립한다.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되, 것이 필요하며 올림피기획단 등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政策計劃은 現況分析, 市民의 意見調查에 기초해야 하며 屋内外 餘暇活動 全般에 대한 계획이어야 한다.

政策計劃이 수립되면 3~5년 단위의 政策執行計劃이 정책실시를 위해서 정해져야 한다. 政策執行計劃은 현재 서울시 本廳에서 年度別로 수립하고 있는 事業計劃을 代替할 수도 있고 이와 연계할 수도 있다. 政策執行計劃 또는 종합사업계획이 수립되면 地域別 또는 주요 사업별로 사업집행 또는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원의 조성 또는 유지보수가 끝나거나, 이와 병행하여 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管理計劃이 주요 公園別・地域別・公園種類別로 마련되어야 한다.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독립할 수도 있는 것으로 공원이용자를 위한 또는 公園活用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發展志向的 行政體制의 構築

### ① 公園慰樂局의 新設과 機構改編

날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市民의 公園, 레크리에이션 需要를 충족하기 위해 시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環境綠地局을 公園慰樂局으로 개편한다. 현재 環境綠地局내의 청소과와 환경과를 제외하고 공원과와 녹지과를 중심으로 확대·재편성하는 것이다. 개편된 公園慰樂局은 원칙적으로 政策機關으로서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고 실제 사업이나 관리는 조정감독하는 것으로 한다. 公園慰樂局아래는 ① 公園政策計劃을 수립, 조정하는 企劃課, ② 대규모 공원의 建設計劃과 기타 공원의 建設을 조정지원하는 建設課, ③ 공원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慰樂施設을 관리하는 慰樂課, ④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관리사무소를 관장하는 公園管理課를 둔다.

公園慰樂局에서는 공원에 대한 都市計劃局의 업무, 都市整備局의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현재 內務局 文化課의 업무중 文化財係의 업무를 제외하고, 文化係의 업무중 豊토문화의 보급연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소의 지도에 관한 사항, 향교 및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 공연자 지도감독, 음반판매업소 지도감독을 제외한 사항을 慰樂課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이러한 改編에 따라 현재 청소과와 환경과는 保健社會局에 속하게 하거나 또는 보건위생과, 의약과와 함께 새로 保健局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다른 방법은 환경과는 보건사회국으로, 청소과는 내무국, 또는 상하수국이나 건설관리국중 하나로 옮기는 것이다.

장기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되어야 할 기구는 公園綠地事務所이다. 공원 녹지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현재 區廳 公園綠地課가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서울市 전체에 5個所를 설치한다. 新設되는 公園綠地事務所는 현재 자연공원, 균린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감독하고, 區廳에서 해온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個區에 분산된 人力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무소가 생기게 되면, 區廳의 공원녹지과는 行政支援만 하도록 한다.

또, 어린이 공원은 洞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지금과 같이 건설 또는 녹지담당이 다른 일과 같이 하는 것보다 전담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원의 조성과 활용을 위해 公園研究所나 造景研究所 또는 事業團을 연구기관, 지원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公園政策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技術的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 현재의 녹지사무소는 造景事業團 또는 事業所에 포함시키거나 독립된 기구로 존속하게 된다.

## ② 短期的 改善方案

전술한 확대개편이 어려운 경우에 몇 가지 단기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공원과를 都市計劃局으로 옮겨서 공원의 지정, 조성, 건축에 관한 업무를 같은 局內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는 公園課와 綠地課를 둘 다 都市計劃局으로 옮기고, 대신 환경녹지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칭하여 청소, 환경과외에 현재 保社局에 속하고 있는 보건위생과를 여기에 두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나 둘째방안은 모두 청소, 환경 2과와 공원, 녹지 2과가 같은 局내에 있는不合理性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人員을 擴張시키되, 기구는 최소의 1경만을 하는 것이다. 즉 公園課內에 開發係, 管理係에 추가하여 建設係를 만들어 새로 人員을 배정하는 것이다. 開發係는 政策計劃만을 담당하고, 조성계획에 관한 업무는 建設係에서 맡도록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本廳의 改善方案 이외에도 현재 자연공원, 균린공원의 관리사무소 인력을 증원하며, 수도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은 法改正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공원이나 균린공원의 청소나 기타 管理는 현재 公園內에 근거를 두고 있는 老人會, 山岳會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民間團體에豫算 또는 행정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부분적으로 맡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계획은 모든 자연공원이나 균린공원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만 하도록 하고 점차擴大해나가야 實效性 있다.

어린이 공원이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 10~20만원으로 되어 있는 維持管理費를 20~4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관리계획이나 책임을 전적으로 洞事務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유지관護에 필요한 사업의 집합도 區廳에서는 보고만 받고 各洞에서 自律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추진위원회를 二元化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지금처럼 有力人士로 후원회 또는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되 이 위원회는 후원회로서 일정한 액수의 誠金만 洞사정에 따라서 모금하고, 실제 관리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지금 各洞에 있는 어머니회와 함께 管理委員을 어린이 공원마다 그 공원이 있는 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되 한 달이나 두 달씩 期間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몇 사람이 한個의組가 되어 실체로 청소도 돋고, 그외 관리도 돋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도 洞事務所에서는 몇 개 놀이터당 한 명씩의 청소원을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회나 노인정이 어린이 놀이터에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管理를 하도록 하는 것이 效果의 일 것이다. 어린이 公園의 관리는 지금처럼 일률적인 方法으로 하지 말고, 各洞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기 洞事務所에서 그 方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 專門人力의 確保와 活用

먼저 現在의 補職規定을 改正하여 공원행정을 하고 있는 技術職 종사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며 專門分野에 계속일을 할 장치를 마련하여 知識이 축적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재 理事會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하도록 되어 있는 環境綠地局長을 農林技監 또는 農林副技監도 補할 수 있게 한다. 또 서울대공원의 관리소장도 一般職보다는 규정을 改正하여 3급 技術職으로만 補하게 하든지 一般職과 技術職을 다 補할 수 있도록 고친다. 공원관리과장도 현재 一般職을 補할 수 있는 것을 技術職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은 현재 지방서기관이 소장이 되는 규정을 고쳐서 기술직 단독으로 또는 기술직과 일반직으로 모두 補하도록 한다.

기술직중에서 현재의 고시과목에 따르면 農林職보다는 造景科目이 포함되어 있는 建築職이 公園行政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원과의 기술적 임용규정을 고쳐서 (이 점에 있어 공원과와 녹지과의 자격요건은 크게 다르다) 농림적 대신에 건축적으로 補하게 하는 것이 더 理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造景學科가 工科大學이 아니고 農科大學에 설치된 곳이 많으므로 농림적으로 그대로 두되, 고시과목에 造景學, 建築學을 필수로 하는 方法도 있다.

## 參考資料 : 主要 外國都市의 公園現況과 行政管理體制

### 1. 美 國

#### 1) 機 構

聯邦體制를 채택하고 있고 地方自治를 강조하고 있는 전통을 가진 美國의 都市行政制度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代表的인 예를 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美國의 都市公園行政制度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公園行政과 慶樂行政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있다. 원래 美國에서는 公園을 市民의 屋外餘暇活動의 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된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公園을 都市의 景觀과 空間計劃으로 강조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公園은 소극적인 餘暇活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주로 산책, 휴식을 하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의 장소로 생각하여 운동을 하는 장소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공원의 기능이 인식되고 있다.<sup>(1)</sup> 오늘날

(1) Virginia Frye, "Development of Municipal Parks and Recreation," in Sydney G. Lutzin & Edward H. Story (eds.), *Managing Municipal Services*,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Washington D.C., 1973), p. 28.

에는 2/3 이상이 공원과 여가활동을 같은 기구안에 두고 있다.

둘째 도시행정기구상 공원행정을 局水準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서구의 先進國에서 이것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美國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市民의 수요가 크고 政府는 레크레이션을 公共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行政傳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局水準에서企劃, 豫算, 人事, 評價 등의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독립기구를 가지고 있다.

셋째 委員會制度이다. 地方自治와 함께 민간참여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주요한 市의行政分野<sup>1)</sup>는 系線組織위에 관료가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統制機構인 委員會로 하여금 市政을 통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에 公園 및 레크레이션局은 공원 및 레크레이션 위원회의 통제아래 있는 테, 委員會는 市長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市民이 선거로 뽑기도 한다. 보통 3年을 임기로 임명 또는 선출되는 委員會는 市民을 代表하여 公園局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며, 장기 공원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人事에 대한 承認權을 갖는다.

아래 그림은 「네브라스카」주 「오하마」市의 공원행정 기구인데, 공원과 레크레이션 뿐만 아니라 市有財產을 관리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公園과 레크레이션 委員會 뿐만 아니라 항만위원회가 局長의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

보다 커운 규모로 되어 있는 곳이 그림에 나타난 스포케인시의 공원 및 레크레이션局의 기구표다. 局長은 委員會의 추천에 의해 市長이 임명하며 공원부와 레크레이션의 두 개의 主務部로 나누어져 있고 行政課와 緑地管理所가 그 밖에 있다.

## 2) 開發政策

전술한 바와 같이 美國은 각 지방행정단위마다 독자적으로 政策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聯邦政府, 州政府, 地方政府 간에는 공원 및 레크레이션 政策에 관하여 긴밀한 수직적 인협력 체계가 있고, 또 지역별로도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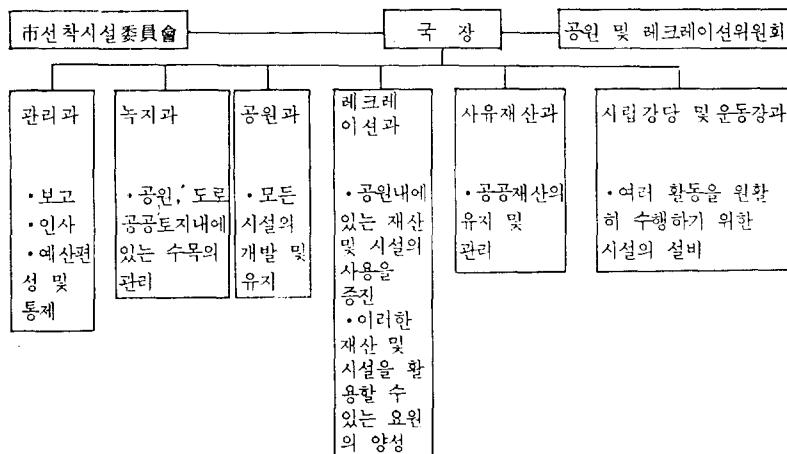


그림 3. 「오마하」市의 공원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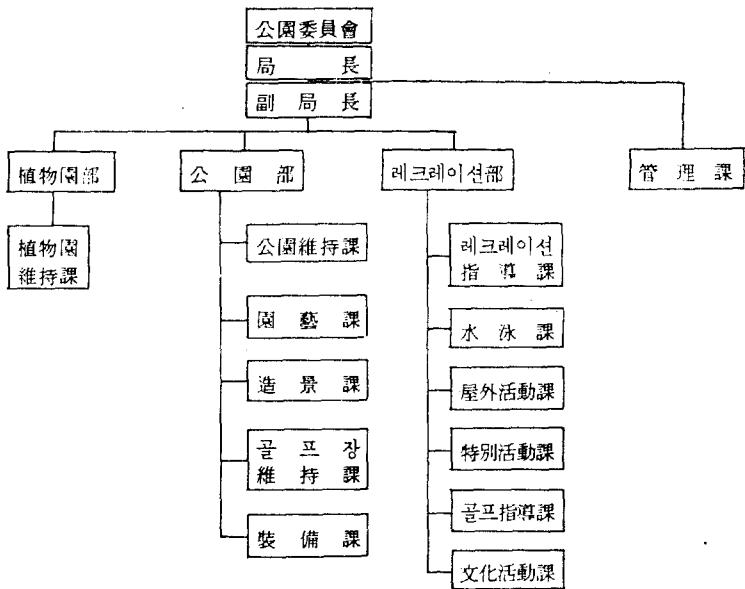


그림 4. 「스포케인」市의 공원기구

美國의 공원과 레크레이션政策은 연방계획, 주계획, 지역계획 그리고 지구계획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 데, 都市水準의 計劃은 都市의 規模와 位置에 따라 地域計劃 또는 地區計劃의 성격을 띠게 된다.

聯邦政府에서 전국적인 屋外 餘暇活動의 계획(여기서는 공원과 屋外 餘暇活動에 대한 계획과一致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1962년 內務部에 설치된 「屋外 레크레이션 局(Bureau of Outdoor Recreation)」이다. 이 局에 의해서 1973년에 최초로 전국적인 屋外 餘暇活動에 관한 계획이 작성되었다. 연방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국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 전국적인 수준에서 여가수요의 변화에 대한 分析과豫測, 여가자원에 대한 조사, 州, 市, 郡부에서의 여가문제와 대책에 대한 分析,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 그 외의 地方自治團體간의 효율적인 협조방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聯邦政府는 주의 屋外餘暇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土地와 水資源의 保存을 위한 基金法」을 기정하고 있다. 基金의 60%는 州政府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 基金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州는 먼저 州單位의 옥외 레크레이션政策을 수립하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州에서 마련한 餘暇(屋外)政策은 5년까지의 장기계획이 될 수 있으나 이 기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연방정부의 옥외 레크레이션 局에서 내리게 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기금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는 최초로 주단위의 종합적인 餘暇計劃을 제출 승인 받은 후에 5년기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여야만 계속해서 연방정부로부터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屋外餘暇活動事業을 지원하기 위한 이 基金은 국립공원의 입장료, 연방부의 토지매각수입, 그리고 모터보트 연료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된다. 州政府에서 작성하는 계획은 州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의 일부로서 작성되어야 한다. 또 도시의 교통, 보건, 교육, 주택정책과의 연계성도 규정해야 한다. 주정부계획은 주내에 있는 모든 屋外餘暇活動의 종류, 자원, 프로그램을 담아야 하고 인구의 변동, 人口集團別 수요변동,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長期發展展望과 對策 그리고 단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州單位의 계획은 地域計劃에 기초하고 있다. 대개 地域計劃은 여러 개의 行政區域을 포함한 넓은 지역에 대한 계획이다. 지역계획의 단위는 보통 大都市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거나 특정한 自然資源이 분포 있는 지역(국립공원지역 등) 또는 성격이 같은 지방도시들을 한 단위로 해서 결정된다. 지역계획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결정된다. 첫째 지역내 주민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지역내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지방의 독자적 성격들이 조화를 갖도록 하는 것, 셋째 自然에 대한 人工的인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 넷째 資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地域計劃은 市나 郡의 단위가 되는 계획이다. 보통 도시공원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수준의 계획이다. 美國의 경우는 성격에 따라 계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기 어려우나, 市單位의 「매스터 플랜」은 公園委員會가 주관을 하고 다른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고 市民들의 意見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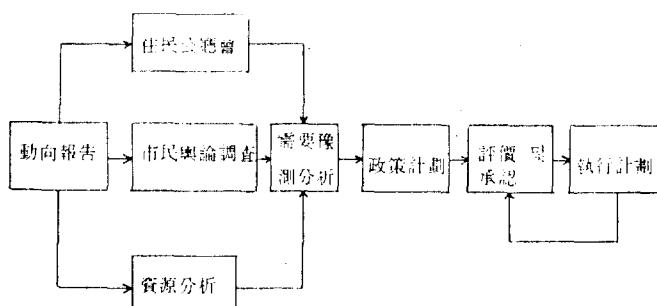


그림 5. 美國의 公園開發計劃樹立過程

앞의 그림에서 動向報告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의 기초적인 작업중에서도 제일 먼저 필요로 것으로 공원 레크레이션局의 현황에 대한 정리 및 평가연구이다. 공청회는 전문가 중심 아니라 시내의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 자신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의견의 청취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성하고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된다. 그리고 市民標本調査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公園

綠地의 需要, 餘暇活動의 경향,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집하는 본격적인 활동이다. 한편 地區내의 여가활동자원에 대한 조사는 현재자원 뿐만 아니라 잠재자원도 포함된다. 需要豫測分析은 지구를 세분화하여 수요에 대비한 자원조사를 기초로 하여 開發需要를 산정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2단계 작업이 끝나면 政策計劃이 입안되고 입안된 계획은 관계부서와 시민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고, 끝으로 執行計劃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計劃過程을 州水準에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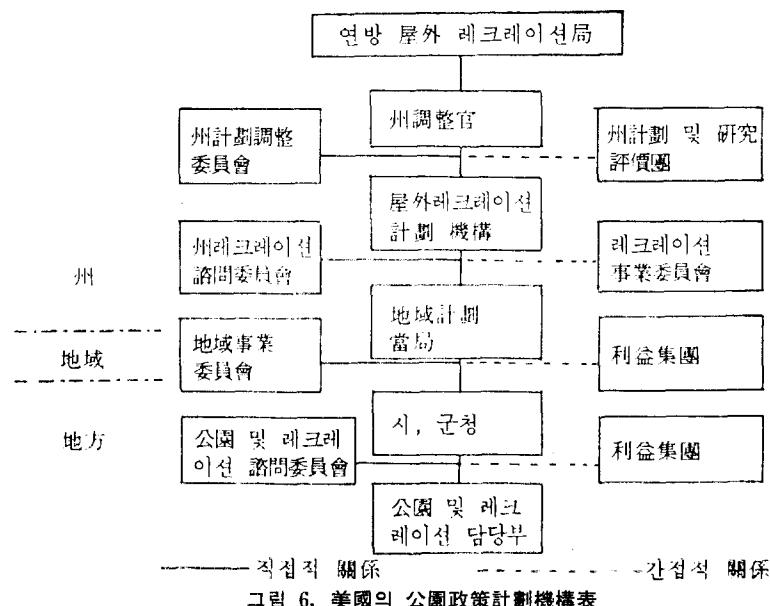


그림 6. 美國의 公園政策計劃機構表

## 2. 自由中國(臺北)<sup>(2)</sup>

### 1) 機 構

臺北市의 公園行政은 工務局 아래 있는 公園路燈 工程管理處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원도로와 가로등에 대한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다투고 있다는 것이 특색인데, 이것은 과거에 물 다 都市景觀 또는 美化에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公園路燈工程管理處는 園藝課, 工程配合課, 工務課, 路燈課, 園藝隊, 路燈工程隊, 總務室, 人事室, 主計室로 구성되어 있다. 또 경비대와 세 개의 공원관리사무소, 한 개의 원예관리소와 한 개의 花卉센터를 산하에 가지고 있다.

(2) 臺北市에 대한 資料는 1982년 4월 현 채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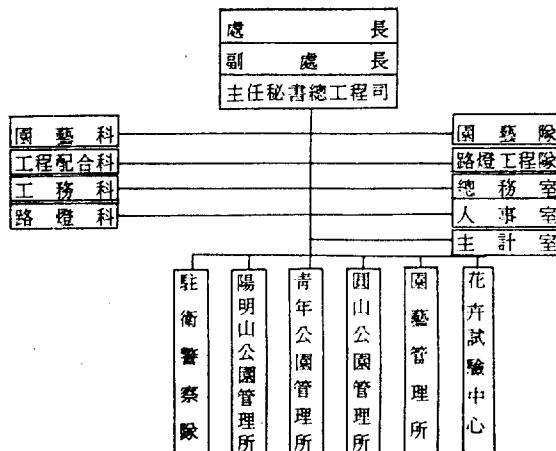


그림 7. 臺北의 公園行政機構

## 2) 現況과 政策

### ① 公園現況

臺北市에는 1982년 4월 현재 860개의 공원용지가 있으며, 이들의 면적은  $13,325m^2$ 에 달하고 있다. 이중 157개의用地가 공원으로 개발되었으며, 開發面積은 모두  $4,242,600m^2$ 로서 시민 1인당 시설공원면적은 약  $1.93m^2$ 이다. 공원성격을 띤 廣場을 제외한 종류별 공원의 수와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表 1〉 臺北 公園現況表 (1982. 4)

公 園 名	個 所	面積(ha)	公 園 名	個 所	面積(ha)
綜合公園	17	142.28	兒童公園	42	9.87
隣里公園	69	44.73	隙地公園	5	2.14
自然公園	24	167.36	계		366.38

### ② 開發計劃

都市計劃法에 의해 1988년 9월 5일 이후 臺北市는 더 이상 公園用地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用地의 확보와 公園開發을 서두르고 있다. 1988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1982년 현재의  $1.9m^2$ 에서  $3m^2$ 로 늘릴 계획이다.

공원구형별 확장목표는 自然公園을 70%, 近隣公園을 50%, 어린이 공원을 40%, 그리고 景觀地帶(施設綠地)를 70%이상 현재보다 증대시키고자 한다.

향후 5년 公園開發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各 區에 2개 이상의 공원확보.
- 도·군·시와 외곽지대의 균형배분

- 多目的公園을 개발하기 위한 現公園分類體制의 개정
- 用地確保를 위한 土地의 公有化
- 공공시설의 건설에 대한 민간참여 규정을 활용하여 民資誘致
- 공원시설과 서비스의 향상으로 質의 提高
- 시민 1명 당 공원면적 6m<sup>2</sup>의 확보

### 3. 日本(東京都)

#### 1) 機構

東京의 公園行政은 建設局안에 있는 公園綠地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公園녹지부아래에는 公원에 대한 전체업무를 조정하고, 산하의 여러 公園녹지사무소를 관할하는 管理課, 公원의 종합적 계획을 맡고 있는 計劃課, 자연공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公園課, 自然公園造成事業을 담당하고 있는 公園建設課, 그리고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靈園課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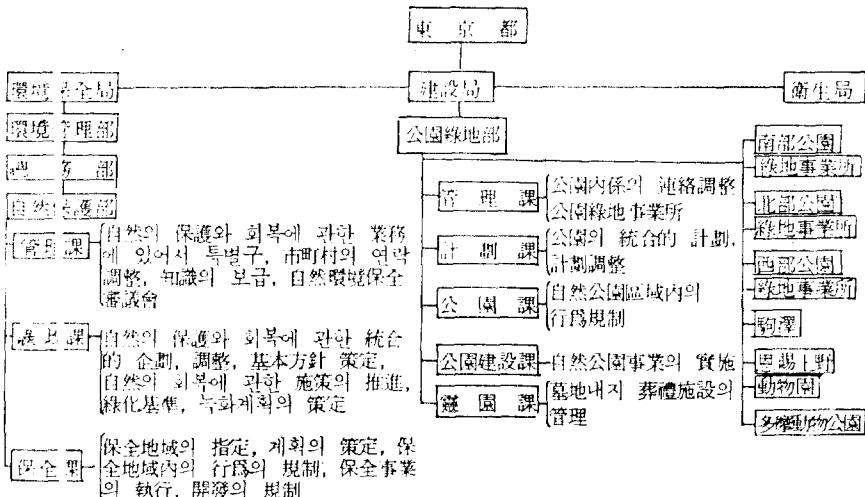


그림 8. 東京都의 公園行政機構

그리고, 公園녹지부아래에는 남부, 서부, 북부 공원녹지사무소 세 개가 있어 지역별로 都立公園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 지역별 공원녹지사무소는 각각 서무과, 관리자, 용지과, 그리고 공사과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내에 있는 都立公園을 관리는 공원별로 있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위, 감독하여 시행한다. 이밖에도 公園綠地부는 2개의 동물공원사무소와 1개의 특수공원사무소를 거느리고 있다. 이 체제는 공원행정기구가 건설국산하에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政策機構, 事業機構, 管理機構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두번째 특성이며, 끝으로 동물원도 관리하는 것도 이색적인 점이다.

#### 2) 公園現況

東京者에 있는 공원은 크게 都市公園과 自然公園의 두 가지이며, 이중 都市公園은 다시 國營公園, 都立公園, 區市町村立公園, 기타 공원으로 나누어지고, 자연공원은 다시 國立公園, 地方公園, 自然公園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공원 종류별 숫자와 전체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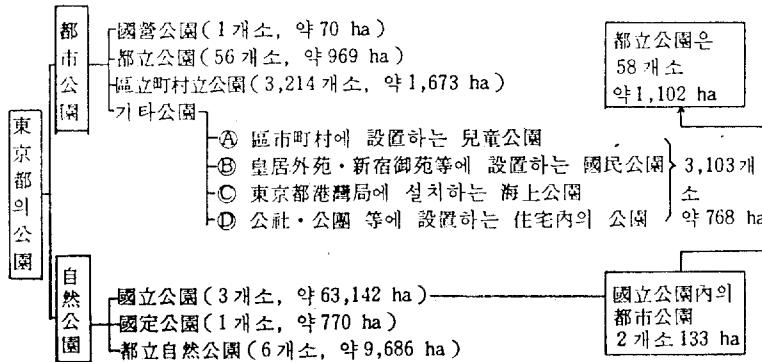


그림 9. 東京의 公園現況

앞의 그림에서 都市公園만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전체 6,105개소의 도시 공원중에서 都立公園이 17개소, 區市町村立公園이 3,106개소, 區市町村立兒童公園이 2,759개소, 海上公園이 33개소, 그리고 기타공원이 240개소가 있다.

東京者의 市民 1인당 공원면적은 1979년의  $2.51\text{m}^2$ 에서 1983년에는  $2.93\text{m}^2$ 로 증가했다.

〈表 2〉 동경의 1인당 공원면적 ( $\text{m}^2$ )

地域	年度	1979	1980	1981	1982	1983
區部		2.35	2.40	2.48	2.61	2.62
市部		2.54	2.66	3.00	3.18	3.28
郡部		2.94	3.03	2.92	3.19	3.23
島部		40.27	40.48	40.09	44.20	44.48
都總計		2.51	2.85	2.73	2.89	2.93

### 3) 開發計劃

東京都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은 東京都 長期計劃과 東京都 總合實施計劃에 나타나 있다. 1982년 12월에 발표된 장기계획은 21세기를 겨냥한 동경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公園綠地에 대한 기본목표는 첫째 도시와 자연의 共存을 목표로 자연환경의 보존을 추진한다. 둘째 都市の 녹지대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6\text{m}^2$ 가 되게끔 공원을 정비, 확대하고, 水資源의 質的改善 및 量的擴大를 위하여 물(水)과 푸르름(綠地)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總合實施計劃은 1983~1985년 3년 동안에 대한 長期計劃의 執行計劃이며 1983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여섯개의 기본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公園綠地에 대한 계획은 이중 水와 緑의 네트워크형성에 포함되어 있다.

- 總合實施計劃의 기본과제
- 防災, 多心型의 형성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福祉水準의 향상
- 中小企業의 진흥
- 청소년: 건전육성
- 水와 緑의 네트워크 형성
- 文化

#### 4) 主要事業

東京都의 공원행정은 공원의 조성과 관리, 녹화뿐만 아니라 동식물원, 야외음악실의 운영도 포함하고 있으며, 묘지공원의 관리업무에서 葬祭施設(묘지공원내)도 관리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공원행정의 범위보다 업무의 영역이 훨씬 넓다. 公園綠地부의 업무를 보면,

- 도시공원에 관한 업무: 도시공원 및 동식물원 관리
- 자연공원에 관한 업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屋外餘暇施設의 편의를 제공
- 묘지공원에 관한 업무: 都에서 운영하는 묘지공원과 葬祭施設의 관리
- 都市綠化에 관한 업무: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녹지를 보호

와 같은 네 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